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10. 26.(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2차, 제5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2-54-194)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필교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어재난방송 확대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8월 25일 위원회 보고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관계부처 의견조회,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방송협회 및 MBN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어재난방송 제공사업자 규정입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상파텔레비전방송 및 종편·보도PP는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 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어재난방송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검토의견입니다. 한국방송협회 제출의견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에 이미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돕기 위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 경보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개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인 바, 개정안은 불필요한 중복 입법임. 고시 내용을 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실시를 위한 방발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임. 규제 신설보다는 스마트 수어방송 또는 AI 기반 아바타 수어방송 개발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을 확대해 향후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자동 수어방송이 제공되는 환경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2조는 지상파와 종편·보도PP, 위성, SO 등이 한국수어와 폐쇄자막 중 하나만 방송해도 되는 규정입니다. 재난방송 시 폐쇄자막방송은 100% 하고 있으나, KBS를 제외한 방송사의 수어방송 실적은 저조합니다. 개정안은 KBS에게만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점과 수어방송에 한정해 확대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방송법 시행령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한국수어를 이용하는

재난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23년도에는 음성-자막-수어 변환 시스템의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24년도에는 음성-자막 변환시스템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MBN 제출의견입니다. 개정안 신설은 추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수어통역사 인력풀이 한정된 상황에서 해당 기준을 준수하려다 오히려 신속한 재난방송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 소액 지원도 일부 지원에 포함될 수 있어, 실질적 지원은 없이 책임 부담만 늘릴 소지 존재. 검토결과입니다. MBN 등 종편에 부과하는 법적 의무와 제재 근거는 없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1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에 국무회의 및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건은 수어재난방송 확대와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재난 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방송사에서는 개정안이 추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무처의 충분한 소통,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해가 갈수록 시청각 장애를 갖게 되는 노년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디어의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더욱 절실해지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내년부터 음성, 자막, 수어 변환 시범서비스를 추진하여 이를 토대로 2024년도부터 어느 방송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 자막 시스템을 추진하여 미디어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만큼 이런 취지가 방송사들의 이해와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통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으니 사무처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재난방송 접근권이 향상되고 재난방송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상 방송사들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적 역할을 고려해서 수어재난 방송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2-54-195)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의 소유제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주식회사 매일방송에 대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의 소유제한 위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한다. 제안 이유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등 3개사에 대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는 지난 5월 ~6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6개사의 영업보고서를 검증하던 중 (주)SBS M&C 등 3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주 3개사의 특수관계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대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유제한 위반 사항을 위원회에 8월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했고 9월 13일까지 피심인들의 의견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등 3개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주로서, 기업 일반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방송광고대행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으며,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JTBC미디어 컴(주)의 주식을 3.7%, (주)MBN미디어랩 주식의 4.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와 동일한 기업집단인 오케이 금융그룹에 소속된 계열회사인 특수관계자 (주)뉴데이즈는 '21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6개사와 총 12억 원의 방송광고 대행거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스비에스입니다. (주)에스비에스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주)에스비

에스엠앤씨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에스비에스와 동일 기업집단인 태영에 소속된 계열회사인 특수관계자 (주)에스비에스미디어넷은 '21년도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주)MBN미디어랩과 2,700만 원의 방송광고 대행거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매일방송입니다. (주)매일방송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주)MBN미디어랩의 주식 37.2%를 소유하고 있고, (주)매일방송과 동일 기업집단인 매경미디어그룹에 소속된 계열회사인 특수관계자 (주)매경헬스는 '21년도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주)MBN미디어랩과 총 1,000만 원의 방송광고 대행거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3개사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방송광고대행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심인 주요 의견 및 검토 의견입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는 2014년 JTBC미디어컴(주) 및 (주)MBN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특수관계자 중 방송광고대행자는 없었으나, 2020년 방송광고대행자인 (주)뉴데이즈가 특수관계자로 편입되어 소유제한 위반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으며, 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 시 위반 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에스비에스는 법 위반 상황 인지 후 즉각 (주)에스비에스미디어넷에 위반 소지가 있는 영업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주)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정관 개정을 완료하여 허가 미디어랩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 시스템을 보완하여 허가미디어랩사와의 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겠다는 대책을 제출했습니다. (주)매일방송은 (주)매경헬스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향후 방송광고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라는 사항을 정관에 추가하고, 등기를 완료했다고 제출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에스비에스와 (주)매일방송은 법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위법 상태를 해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 시정조치(안)입니다. 첫 번째 시정명령입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3항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행정지도입니다. (주)에스비에스와 (주)매일방송의 경우 시정명령 사전 통지 기간 중에 위반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전례에 따라 별도의 시정명령 조치는 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만, (주)에스비에스에 대해 '제출한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주)매일방송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정명령 처분을 통지 및 행정지도하고, 내년 4월에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피심인 제출의견과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두 군데는 해소가 된 것이지요?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도 노력하겠다는 것이지요?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사무처가 미디어랩 6개사의 영업보고서를 검증해 본 결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등 3개사의 특수관계자가 방송광고를 대행해서 결과적으로는 미디어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들 3개사 모두 법 위반을 인정하고 있고, 이 중 (주)에스비에스와 (주)매일방송은 이미 위반사항을 해소했습니다. 다만, 위반사항이 아직 남아 있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에 대한 시정명령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활발해진 인수합병으로 광고대행자가 새롭게 특수관계자로 편입되며 이로 인해 타 미디어랩의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사무처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한번 더 충분히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안건 역시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1월 2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4분 폐회 】